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249
--------	--------	-----

제출년월일 : 1993. 7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 동 임시조치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 근거규정이 없어 조세형평이 맞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

주요골자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주민을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임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

기타 참고자료 (별첨)

##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민을 포함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 한다.



## 참 고 자 료

- 지방세법
- 도시재개발법
-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 내무부 조례준칙

## 근 거 법 규

### 지 방 세 법 (부분발취)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근 거 법 규

### 0 도시재개발법 (부분발췌)

9조(토지등의 소유자의 시행)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한다.

10조(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 ①건설부장관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양공사를 합하여 "공사"라 한다)와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1조(제3개발자의 시행) ①건설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제3개발자로 지정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0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부분발췌)

6조(주거환경 개선계획의 수립등) ①시장등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택의 건설 및 그 부대, 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존치, 수선, 증축, 개축, 철거 등 개량방법 및 그 대상

7조(주거환경 개선계획의 수립등) ①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장등이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시행할 수 있다.

"정직 · 성실하게 봉사한다."

내 무 부

우 110 760 /종로구 세종로 77 종합청사 1407호 /전화 731-2510 (형)2510 /전송 733-2755

문서번호 세재 13415- 91

시행일자 1993

경유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세정과장

선 결	세 정 과 장	<i>JK</i>	지	
접	일 자 시 각		시	
수	번 호	<i>100</i>	결	
처	리 과		재	
담	당 자		공	
			람	

제목 도시개발사업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준칙 시달

1.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시기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행 도시개발사업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면제하나, 통 임시조치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과세면제 근거규정이 없어 조세형명이 맞지 아니함.

2.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과세면제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준칙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하기 바람.

- 첨부 : 1. 개정조례(안) 1부  
2. 개정조례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내 무 부 장

지방세재국장 전결



수신처 : 나 01-06. 10 18.

- 7 -

## ○○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민을 포함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